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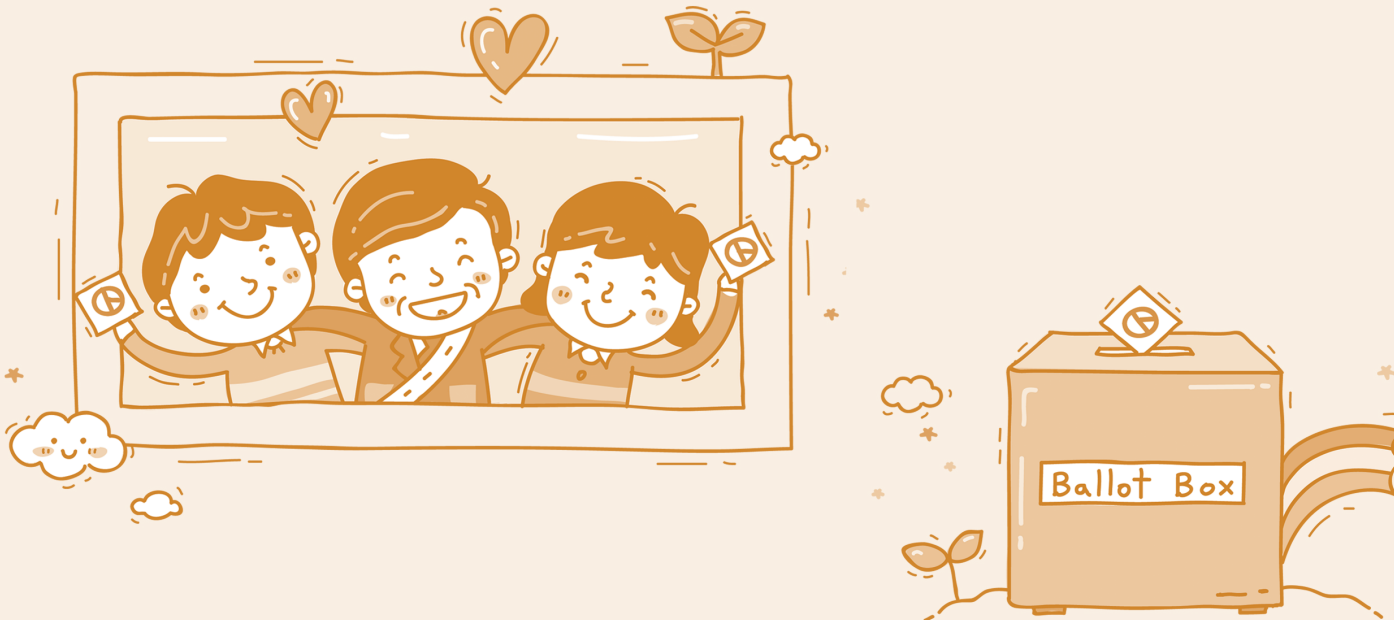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안내서

이 책자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포함)에 있어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적법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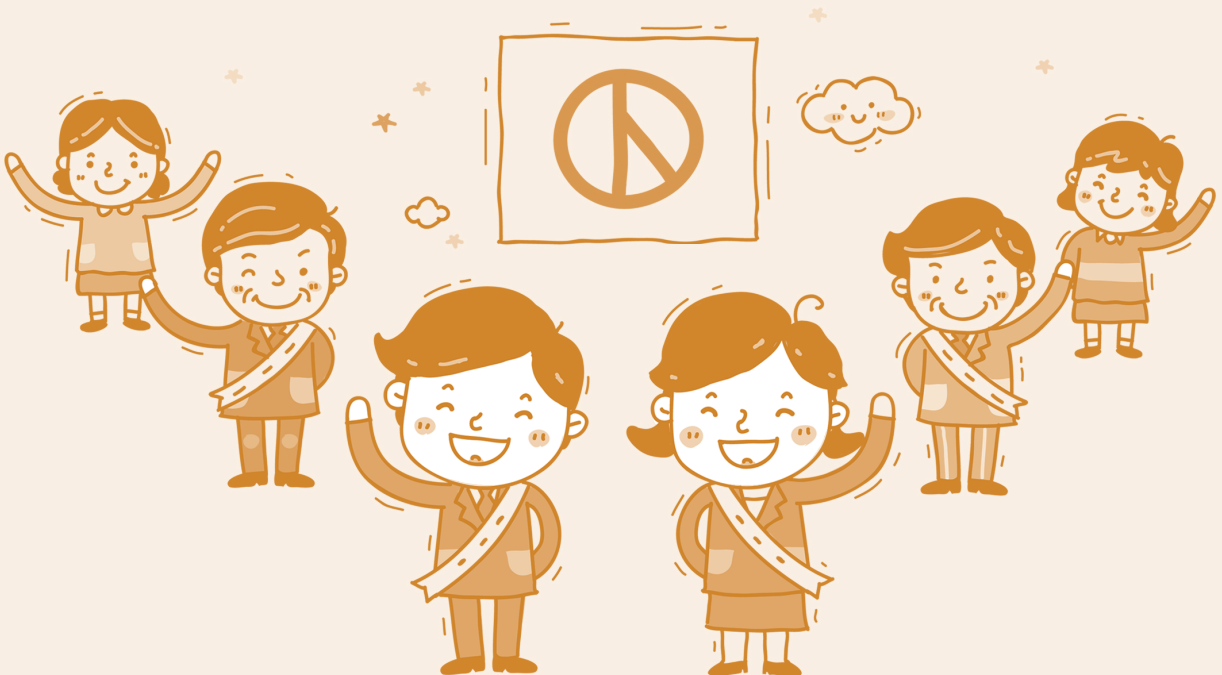
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는 기 배부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당·(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를 활용하여 회계처리 하시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의 구분, 선거비용 보전대상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본 책자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선거비용 보전안내서 책자 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www.nec.go.kr)-정보광장-정치자금정보-정치자금자료』란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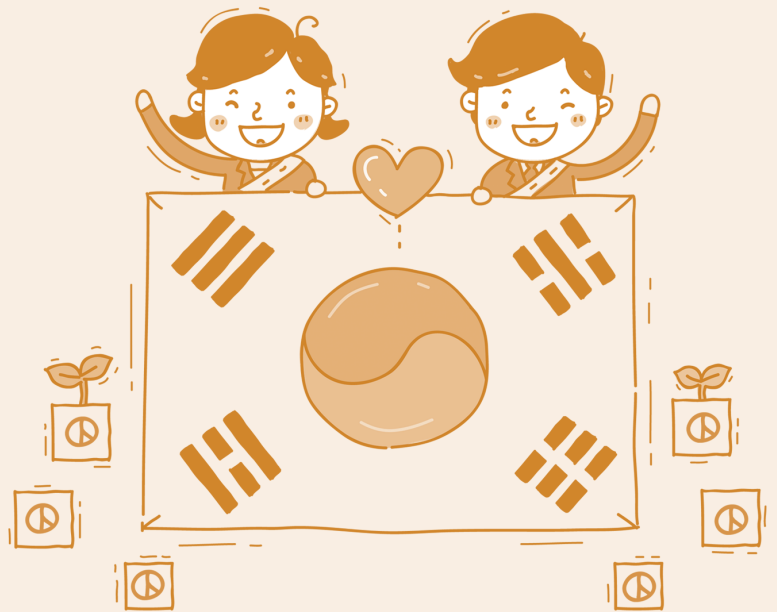
선거비용 보전안내서

I. 제18대 대통령선거 등의 주요 회계사무 일정	7
II.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보전제한·반환	
1. 선거비용 보전청구	8
2. 부담비용 청구	11
3.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	12
III.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1. 선거비용	14
2.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18





IV. 보전대상 비용과 보전대상 비용이 아닌 비용	
1. 보전대상 비용	21
2.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22
V. 선거비용 구분 및 보전항목 일람표	23
VI.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1. 산정기준	48
2.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49
VII. Q & A	56



I. 제18대 대통령선거 등의 주요 회계사무 일정

- 후보자등록기간 : 2012. 11. 25.(일) ~ 11. 26.(월)
- 선거운동기간 : 2012. 11. 27.(화) ~ 12. 18.(화) (22일간)
- 선거일 : 2012. 12. 19.(수)

주요 회계사무 일정

주요 회계사무		일정	담당주체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 공고(대통령선거)		2012. 4. 13.(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 · 신고 및 예금계좌 신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예비)후보자, 정당의 대표자
		선거연락소 설치신고시	선거연락소장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시	정당선거사무소장
정치자금 수입 · 지출내역의 회계장부 기재 및 영수증 구비		수입 · 지출건 발생시마다	회계책임자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2013. 1. 8.(화)까지	후보자, 정당
정치자금 수입 · 지출 회계마감		2013. 1. 8.(화)까지	회계책임자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 (선거비용 추가 보전청구)	대통령선거	2013. 1. 28.(월)까지	회계책임자
	대통령선거외 선거	2013. 1. 18.(금)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2013. 1. 18.(금)까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수입 · 지출내역 확인 · 조사		별도 일정통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및 부담비용 보전 · 지급		2013. 2. 27.(수)까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Ⅱ.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보전제한·반환

1. 선거비용 보전청구

□ 보전요건

● 후보자가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 전액 보전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① 청구기한 : 2013. 1. 8.(화)까지

※ 청구내역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추가 보전청구 가능

- 대 통 령 선 거 : 2013. 1. 28.(월)
- 대통령선거외 선거 : 2013. 1. 18.(금)

② 청구권자 :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추천 정당)

③ 청구방법

㉓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별 보전청구액을 포함하여 기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선거사무소 보전청구 세부 내역, 증빙서류 사본과 선거연락소의 각 계정별 보전청구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㉔ 선거연락소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보전청구 세부내역,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선거연락소에 대응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④ 청구서 작성

㉓ 명세서 작성

-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 보고관리 ⇒ 수입·지출부에서《엑셀》서식으로 저장 후 보전대상 선거비용만 정리·집계하도록 함.
- 부득이하게 선거비용 과목의 수입·지출부 전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닌 지출항목은 붉은펜으로 삭선 처리하여야 함.

㉔ 첨부서류 작성

● 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계약서·견적서 등과 적법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

적법한 영수증(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

“적법한 영수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차가 불가능하여 선거운동용 차량·장비·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님.

● 대금 등을 미지급한 경우

계약서·견적서 등과 그 대금을 청구한 적법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

- ※ 정당·후보자가 소유한 장비·물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임차가격으로 장부에 수입과 동시에 지출로 처리하여 선거비용제한액에 산입하되, 보전대상은 아님.
- ※ 보전청구 기한까지 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전화요금 등) 수입과 지출명세서의 맨 하단에 지출내역과 예상지출금액을 기재하여 보전청구하되, 회계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지출관련업체(통신업체 등)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출확정금이 기재된 근거서류를 추가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㉕ 청구인의 연대 서명·날인

- 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추천 정당)·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연대 서명·날인함.
-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가 연대 서명·날인하여야 함.

⑤ 수령 예금계좌

후보자 명의의 예금계좌(정당추천후보자인 경우 신고된 정당의 수입용 계좌)

※ 후보자 명의를 아닌 경우에는 수령위임을 첨부하여야 함.

⑥ 전화이용 선거운동비용 청구

㉑ 청구범위

-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 이미 설치된 전화 가운데 선거운동기간 중(2012. 11. 27. ~ 12. 18.)에 선거운동용으로 구분 사용한 전화의 이용요금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임시로 설치한 전화의 설치비 및 선거운동기간 중의 기본료·통화료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

㉒ 청구절차

- 선거사무소와 각 선거연락소에서 사용한 전화번호내역을 취합·정리하여 통신회사에 ‘선거운동용 전화요금정산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연락소에 설치된 전화기 중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된 임시전화 또는 일반전화에 한함.
- 전화비용 예상액을 추산하여 장부의 “지출액”란에 기재 후 영수증 일련번호란에 “미지급”이라고 기재하고, 통신회사에 제출한 선거운동용 전화번호 정산청구서 사본을 보전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통신회사로부터 선거운동에 사용한 전화요금내역을 교부받은 후, 전화요금 보전청구 내역서를 작성, 그 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㉓ 유의사항

전화요금 보전청구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이외의 다른 전화에 대한 설치·기본료 및 통화료는 보전하지 아니함.

⑦ 보전비용 지급

- 지급기한 : 2013. 2. 27.(수)까지
- 지급방법 : 보전청구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

2. 부담비용 청구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비용 및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를 선거일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함.

※ 점자형 선거공보 등 : 점자형 선거공보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선거공약서

① 부담범위

-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 점자인쇄비 · 제본비 · 지대(150g/㎡이내의 백상지 기준)
- 점자형 선거공보 등의 앞면 한글 게재사항 인쇄료
- 점자형 선거공보 등을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운반비용
※ 부담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으로 지출 처리하도록 함.

②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후보자(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

-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후보자 : 모든 등급의 사람
- 그 밖의 장애인 후보자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사람

③ 세부 부담기준

- 통상적인 인쇄가격 범위 안에서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비용을 부담함.
- 점자형 선거공보 등의 앞면에 한글 게재 사항은 한글 1도 인쇄료를 지급함.
- 점자형 선거공보 등의 앞면 한글 게재 사항(선거의 종류 등)을 제외한 문자 · 그림 · 사진 등 인쇄비와 기획 · 도안료는 지급하지 않음.
※ 점자형 선거공보 등 제출시 한글원고 1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활동보조인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될 실비에서 해당 금액을 감하고 지급하여야 함.

④ 청구절차

- 청구권자 : 접자형 선거공보 등을 제출한 모든 후보자
- 청구기한 : 2013. 1. 8.(화)까지
- 청구서식 : 접자형 선거공보 등 부담비용 지급청구서
- 첨부서류 : 해당 수입·지출명세서 사본,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⑤ 부담비용 지급

- 지급기한 : 2013. 2. 27.(수)까지
- 지급방법 : 부담비용 지급청구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

3.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

① 전액 보전제한

-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미만 후보자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해당금액의 2배 보전제한

- 대 상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경우
- 제한금액 :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③ 해당금액의 5배 보전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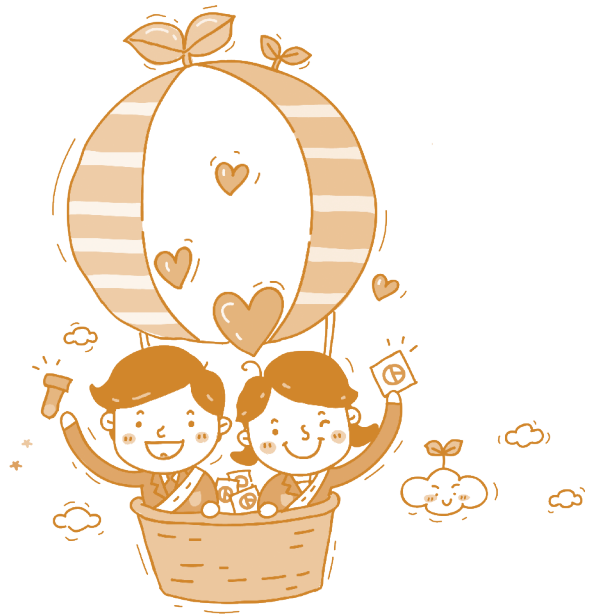
- 대 상 : 정당, (예비)후보자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 제261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 제한금액 :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④ 해당금액의 2배 보전유예

- 대 상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
 - 유예기간 :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 유예금액 :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 유예금액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정산 처리됨.

⑤ 착오 지급된 보전비용 반환(선거비용 보전 후)

-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에 보전받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보전금액의 반환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선거비용 보전청구내역 확인 및 선거비용 확인·조사결과 과다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과다지급 분은 환수 조치됨.



Ⅲ.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1. 선거비용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금전·물품·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①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

●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포함)나 선거연락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소에 LED(동영상 표출은 제외)를 이용한 간판·현판·현수막 설치시 그 제작비용
 - 고층건물에 현수막 등 설치·철거에 따른 특수장비(고가사다리차 등) 임차비용
 - 선거사무소 외벽에 현수막 등의 설치공간이 없어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현수막 등을 게시한 경우 그 구조물 설치비용
 -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등을 교체·보완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보완된 현수막 등의 제작·설치·철거비 등

-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실비(숙박비 제외)
 - 후보자의 가족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하고 지급한 수당·실비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취사비 등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후보자 사진의 작성비용과 선거벽보의 보완 첩부 비용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기획·도안료, 인쇄료
 - 선거벽보·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의 제작과 관련한 교정비용(기획 · 도안료에 포함)
- 선거벽보 · 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
- 접지형 선거공약서의 발송용봉투 작성비와 우편발송 비용
- 오 · 훼손된 선거벽보의 재첩부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부임 등

◎ 거리게시용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 ·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제작 · 설치 · 철거비
-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현수막의 제작 · 설치 · 철거비
-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부득이 개인소유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급한 사용료(통상거래가격) 등

◎ 어깨띠, 표찰 · 수기 등 선거운동용 소품 등의 구입 · 제작 등 비용

- 「공직선거법」 제68조에 규정된 정당한 어깨띠, 윗옷 · 모자 등 소품 착용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사용한 어깨띠, 윗옷 · 모자 등 소품(이하에서 ‘어깨띠 등 소품’ 이라고 함) 제작비
- 선거운동용 윗옷을 교체 사용하기 위해 여러 종류로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제작비용
-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어깨띠 등 소품의 제작비
- 여러 종류로 제작한 각 어깨띠 등 소품 제작비(실제 착용가능한 수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함)
- LED 네온보드를 「공직선거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임차비용 등
- LED 화면이 부착된 배낭 또는 허리띠의 임차비용

◎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및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

- 신문·방송·인터넷광고 기획·도안, 제작·광고비
- 방송연설의 제작비·방송료
- 방송사와 방송연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포함된 후보자 분장 비용 또는 방송연설을 위하여 전문분장업체에 지불한 분장비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 방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소요되는 비용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각종 홍보물 설치와 관련한 기획·도안료 및 설치·철거비
-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도색한 경우 그 도색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임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연단 제작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발전기 임차비
- 유료주차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유류비, 유료통행료, 섬지역에 도선하였을 경우 그 도선료
- 확장장치·녹화기 임차비
- 로고송 제작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용하는 녹화기용 영상홍보물의 CF·애니메이션 등 기획·도안료, 제작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설치된 녹화기를 통하여 방영하는 홍보물에 수화통역을 함께 방영하는 경우 수화통역자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등

◎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의 설치비 및 통화료

- 임시전화 임차료, 설치·기본료, 통화료(문자메시지 전송요금 포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문자메시지 전송요금 포함)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정횟수 5회(예비후보자로서 행한 경우는 횟수에 산입하되 보전하지 아니함)이내에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한 컴퓨터, CTI 전용 전화기,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료
-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통화연결음 제작비용 등

◎ 선거운동용 명함(접자형 포함) 제작 비용

◎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 전자우편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설치비 및 이용료
-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리·업데이트 비용
- 스마트폰 3차원 증강현실(AR기술)을 활용한 선거용 홍보물 등의 제작비용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 전송용 동영상 제작비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그 밖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첩부·철거비
-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첩부하는 선거벽보 등 코팅비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등

●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②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 소장 ·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추천정당 포함)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③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 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추천정당 포함)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④ ② 및 ③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추천정당 포함), ② 또는 ③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추천정당 포함)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2.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①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선거권자 추천장 인쇄비용 등)
-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서류에 첨부하기 위한 후보자 사진 작성비용
- 정책 · 공약 개발 등 선거운동기획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운동 준비 등을 위한 적법한 여론조사 비용
- 방송연설 시연에 소요된 비용 등

②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그 밖의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③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비용
- 선거비용의 계좌입금·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수표발행 수수료
- 「공직선거법」 위반 과태료
- 주차위반 과태료, 교통범칙금 등

④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그 밖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그 밖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에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신규로 설치한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그 밖의 유지비는 선거비용임.

⑤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 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
- 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 차광용 또는 외부차단용 섨팅비,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
- 책상 및 의자 등 OA 임차·구입·설치비
- 칸막이 등 내부 구조물 설치 및 철거 등 내부 수리비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선거운동용 전화 키폰 공사비
- 선거사무소 등에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비한 칸막이 설치비
- TV, 복사기, 프린터, 정수기, 냉·난방장치 등 설치·유지·구입·임차비
- 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
- 선거사무소 등의 각종 인영·고무인 등 제작비
- 선거사무소 등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의 생수·휴지·쓰레기 봉투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의 내부 선거홍보물 제작·첩부·철거비
- 선거사무소 등의 신문·잡지 등 구독료
-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방송의 설치·유지비
- 선거사무소 방문객 제공용 커피 자동판매기 임차비용

-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 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 등
- ⑥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 비용(『공직선거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 등을 첩부 운행하는 자동차와 선박의 운영비용 포함)
 -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임차비·유류비·기사인건비·수리비 등
 - ⑦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 ⑧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⑨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 정리비용
 -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담당하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일후에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비용 등
 - 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부담비용)
 - 점자형 선거공보 등의 작성비용
 - 장애인 후보자가 그의 활동보조인(활동보조인은 1명만 둘 수 있으며 선임 신고하여야 함)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⑪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

IV. 보전대상 비용과 보전대상 비용이 아닌 비용

1. 보전대상 비용

선거비용 보전이란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공직 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액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하는 것을 말함.

① 인쇄물 작성관련

-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 사진 작성비용
- 후보자 명함 작성비용(예비후보자용 제외)

② 시설물 등 제작관련

- 거리 현수막 또는 선거사무소·연락소의 간판·현판·현수막 등의 제작·게시·철거비용
- 어깨띠, 옷옷·표찰·수기 등 선거운동용 소품 구입·제작 등 비용

③ 공개장소 연설·대담관련

- 연설·대담차량(발전기 포함) 임차 및 운전기사임, 유류비, 통행요금 등
- 연설·대담차량의 연단 제작 및 각종 홍보물 설치·철거비용
- 연설·대담차량의 확성장치 및 녹화기 임차비용
- 연설·대담차량의 로고송 제작비

④ 선거사무관계자 수당과 실비관련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숙박비 제외)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제공한 취사비용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한 식사비용

⑤ 기타 선거운동관련

- 후보자등의 방송연설관련 소요비용
- 신문·방송·인터넷광고 관련 소요비용 등

※ 기타 보전대상 선거운동방법별 내용은 「V. 선거비용 구분 및 보전항목 일람표」 참조

2. 보전대상 비용이 아닌 비용

- ①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 ②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 ③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 ④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되는데 소요되는 비용
- ⑤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 ⑦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 ⑧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 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비용
- ⑨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 ⑩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 ※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대상임.
- ⑪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⑫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방문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 비용
- ⑬ 정치자금법에 따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 ⑭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용

V. 선거비용 구분 및 보전항목 일람표

※ 이 예시는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법규개정이나 선례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 ● 당내경선운동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위반되는 경선운동비용		○		
	예비후보자등록후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선운동비용			○	

● ● ●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리·업데이트 비용		○		
	예비후보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글 등을 게시하기 위한 아이폰 구입비		○		
	스마트폰 3차원 증강현실(AR기술)을 활용한 선거용 홍보물 등의 모바일 AR기술 제작비용		○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인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 등을 상주시키고 그에게 지급한 인건비 ↳ 위법비용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서 종전부터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		
	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		○		
	컵라면, 통닭, 족발, 담배 구입비 ⇨ 위법비용		○		
	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 (전화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무소 등) 임차·설치·유지비 ⇨ 위법비용		○		
	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			○	
	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 차광용 또는 외부차단용 선풍기,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			○	
	책상 및 의자 등 OA구입·설치비			○	
	칸막이 등 내부구조물 설치 및 철거비 등 내부 수리비			○	
	TV, 복사기, 전화기, 프린터, 정수기, 냉·난방장치 등 설치·유지·구입·임차비			○	
	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			○	
	각종 인영·고무인 등 제작비			○	
	선거사무소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			○	
	선거사무소의 생수·휴지·쓰레기봉투 구입비			○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할 침구류 구입비			○	
	선거운동과 관련한 도서 구입비			○	
	선거사무소의 냉·난방용 연료비			○	
선거사무소 내부의 선거홍보물 제작·첨부·게시비			○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등의 신문·잡지 등 구독료			○	
	선거사무소 등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방송의 설치·유지비			○	
	선거사무소 이전비			○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당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 등 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			○	
	선거사무소 등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없는 단순 잡무처리(차대접, 청소 등)를 담당한 노무자에게 지급한 인부임			○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			○	

●●● 예비후보자 법정 간판·현판·현수막(간판 등이라 함)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사무소의 간판 등 제작·설치·철거비		○		
	건물 외벽면에 현수막 설치를 위해 지급된 정당한 사용료		○		
	과거 선거시 사용했던 간판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그 통상적인 제작비		○		
	간판 등을 교체·보완하는 경우 제작·설치비		○		

●●● 예비후보자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명함(접자형 포함) 제작비		○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일부만 배부하고 중지한 경우 명함 전체 제작비용 ⇒ 위법비용		○		

● ● ● 예비후보자 전자우편 · 전화 · 문자메시지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제60조의3 (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	인터넷 설치 · 유지비			○			
	대량 전자우편발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전자우편 디자인 및 편집비용			○			
	홈서브 장비 임대료 및 와이브로 데이터 사용요금			○			
	예비후보자의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 전송용 동영상 제작비용			○			
	전화 설치비	임시전화 설치 · 기본료			○		
		임시전화기 임차료			○		
	전화 통화료 <small>(선거운동용전화는 임시전화사용을 원칙으로 함)</small>		송 ·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전화 (휴대전화 포함) 통화료			○	
	선거사무소에 설치한 전화를 통한 애드다이얼 서비스 이용요금(문자외의 음성정보는 제외)			○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문자 외의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			○	
			문자외의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 ⇨ 위법비용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법정횟수 5회(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는 후보자로서 행하는 횟수에 포함됨. 이하에서 같음) 이내에서 전송한 경우 그 전송에 소요된 비용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법정횟수 5회를 초과하여 전송한 경우 그 초과 전송에 소요된 비용 ⇨ 위법비용 ※ 예비후보자로서 법정횟수 5회를 모두 전송한 경우 후보자로서는 전송할 수 없음			○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 ⇨ 위법비용			○	

●●● 예비후보자 홍보물(세대수의 10/100 이내)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비(기획·도안료, 인쇄료)		○		
	홍보물 봉투 제작비, 발송 소모품비, 발송우편 요금, 반송된 경우의 재발송 우편요금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전문업체와 계약하고 지불한 홍보물 발송비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라벨접부, 봉투봉합 작업 등에 종사한 인부에게 지급한 직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교부비			○	

●●● 예비후보자 어깨띠 및 표지물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 어깨띠·표지물 이용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어깨띠: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표지물: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		

●●● 예비후보자공약집(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선거)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4 (예비후보자 공약집)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비용			○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포함, 이하 '선거사무소 등' 이라 함)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써 선거기간 전에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	○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		○		
	컵라면, 통닭, 족발, 담배 구입비 ⇨ 위법비용		○		
	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전화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무소 등) 임차·설치·유지비 ⇨ 위법비용		○		
	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			○	
	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 차광용 또는 외부차단용 썬팅비,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			○	
	책상 및 의자 등 OA 임차·구입·설치비			○	
	칸막이 등 내부 구조물 설치 및 철거 등 내부 수리비			○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운동용 전화 키폰 공사비			○	
	선거사무소 등에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칸막이 설치비			○	
	TV, 복사기, 프린터, 정수기, 냉·난방장치 등 설치·유지·구입·임차비			○	
	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			○	
	선거사무소 등의 각종 인영·고무인 등 제작비			○	
	선거사무소 등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의 생수·휴지·쓰레기 봉투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에서 사용할 침구류 구입비			○	
	선거운동과 관련된 도서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의 냉·난방용 연료비			○	
선거사무소 등의 내부 선거홍보물 제작·첨부·철거비			○		
선거사무소 등의 신문·잡지 등 구독료			○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방송 모니터링 종합유선방송의 설치·유지비			○	
	선거사무소 등의 이전비			○	
	선거사무소 등 방문객 제공용 커피 자동판매기 임차비용			○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			○	
	선거사무소 등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단순 잡무처리 (차대접, 청소 등)를 담당할 노무자에게 지급한 인부임			○	
	개소식과 관련하여 다과 제공을 위한 준비도구 (쟁반, 접시, 일회용젓가락, 숟가락 등)의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에 세콤, 캡스 등 보안장치 설치비			○	

●●●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현판·현수막(이하 ‘간판 등’ 이라 함),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 등의 제작·설치·철거비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LED(동영상 표출은 제외)를 이용한 간판 등의 설치시 그 제작비용	○			
	고층건물에 간판 등 설치·철거에 따른 특수장비(고가 사다리차 등) 임차비용	○			
	선거사무소 외벽에 간판 등의 설치공간이 없어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간판 등을 게시한 경우 그 구조물 설치비용	○			
	현수막의 기획·도안과 현수막 제작을 별개의 업체와 계약한 경우 현수막 기획·도안료 ↳ 현수막의 통상거래가격 초과분은 보전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당초 설치계약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선거일 후에 선거사무소 간판 등의 철거에 소요된 비용	○			
	예비후보자 시절 제작·설치한 후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에도 계속 설치한 간판 등의 제작·설치비 (다만 해당 간판 등을 선거운동기간 중에 교체하는 경우에는 새로 교체한 간판 등의 비용만 보전)	○			일할계산
	선거운동기간 중 간판 등을 교체·보완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보완된 간판 등의 제작·설치·철거비	○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면에 현수막 설치를 위해 지급된 정당한 사용료	○			
	선거사무소 내부현수막을 외부현수막으로 대체하여 게시하는 경우 그 현수막 게시비용	○			
	선거사무소 외벽에 붙이는 선거벽보 코팅비	○			
	통상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현수막의 기획·도안료 외에 별도의 기획·도안료		○		
	과거 선거시 사용하였던 간판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그 통상적인 제작비		○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 첨부하는 선거벽보에 별도의 형광설비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		○		
	법정 수량을 초과한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의 설치·철거비 ⇨ 위법비용		○		
	야간에 선거사무소 외벽을 비추기 위해 설치한 조명 설치비용			○	
	선거사무소의 간판 등을 비추기 위해 별도 설치한 조명시설 설치비용			○	
	선거사무소 현수막 설치시 원래 있던 다른 가게의 현수막을 이동 게시하는데 소요된 비용			○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로 인해 주변 상가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여 통상의 손해배상 차원에서 정당하게 요구된 비용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 ● ●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기획·도안료, 인쇄료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통상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제작한 경우 ⇒ 실거래 가격을 보전함	○			통상거래 가격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통상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제작한 경우 ⇒ 통상거래가격을 보전함	○			실거래 가격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제작과 관련한 교정비용(기획·도안료에 포함)	○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	○			
제64조 (선거벽보)	내용이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은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각 기획·도안료	○			
제65조 (선거공보)	오·훼손된 선거벽보의 재첩부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부임	○			
제66조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선거공약서에 게재하기 위한 항공사진 촬영비용	○			
	선거벽보·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업체가 일반과세사업자임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경우		○		
	후보자측 잘못으로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재제작한 경우 잘못 제작된 선거벽보·선거공보 원고 기획·도안료, 인쇄료		○		
	과거에 찍어둔 사진 또는 사진원판(필름)을 사용하여 선거벽보 게재용 사진을 제작한 경우 그 촬영비		○		통상거래 가격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4조 (선거벽보) 제65조 (선거공보) 제66조 (선거공약서)	정당·후보자가 직접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기획·도안한 경우		○		통상거래 가격	
	선거공보를 정상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후보자측(배송업체) 잘못(배송과정에서 빗물이 스며들어 일부 수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으로 일부 수량을 다시 제작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매수를 초과 인쇄하여 제공한 경우 그 초과 인쇄비 ↳ 위법비용			○		
	선거운동 준비행위인 정책·공약개발, 여론조사 기획 등에 소요된 컨설팅 비용			○		

●●● 점자형 선거공보·선거공약서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5조 (선거공보) 제66조 (선거공약서)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발송용봉투 작성비와 우편발송비용	○			
	점자형 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비용			○ (부담)	
	점자형 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			○ (부담)	
	점자형 선거공보에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 외에 선거공보의 내용 또는 그림 등이 들어간 경우 그 기획·도안료, 인쇄료			○ (미부담)	
	후보자측 잘못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재제작한 경우 잘못 제작된 점자형 선거공보 원고 기획·도안료, 인쇄료			○ (미부담)	

●●● 거리게시용 현수막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7조 (현수막)	현수막 제작·설치·철거비	○			
	통상적인 제작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제작한 경우 ⇨ 실거래가격을 보전함	○			통상거래 가격
	통상적인 제작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제작한 경우 ⇨ 통상거래가격을 보전함	○			실거래 가격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현수막의 제작·설치·철거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이동 게시한 경우 현수막 제작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이동게시에 소요된 통상적인 인건비	○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부득이 개인소유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급한 사용료 ⇨ 통상거래가격 보전	○			
	현수막을 제작하였으나 후보자측의 과실 또는 변심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제작비용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현수막 이동비용 ⇨ 위법비용		○		

●●●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8조 (어깨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윗 옷 : 규칙 제59조 제1항제 5호에 따른 3만원 이내 - 모자, 마스크트, 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p>『공직선거법』 제68조에 규정된 정당한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 착용자가 사용한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이하에서 '어깨띠 등 소품' 이라고 함) 제작비</p> <p>※ 어깨띠 등 소품 착용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p>	○			

공직선거법 조 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8조 (어깨띠)	선거운동용 옷을 교체 사용하기 위해 여러 종류로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제작비용	○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어깨띠 등 소품의 제작비	○			
	여러 종류로 제작한 각 어깨띠 등 소품 제작비 (실제 착용 가능한 수 범위내에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함)	○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이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LED 네온보드의 임차비용	○			
	『공직선거법』 제68조에 의한 어깨띠 등 소품 이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소품 등 제작·구입비 ⇨ 위법비용		○		
	『공직선거법』 제6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용한 어깨띠 등 소품 제작비 ⇨ 위법비용		○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하여 업체로부터 택배 등을 통하여 받은 경우 그 운반비용			○	

●●● 신문광고(대통령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공직선거법 조 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69조 (신문광고)	신문광고 원고 기획·도안료	○			
	신문광고료(최저요금)	○			
	신문광고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	○			

●●● 방송광고(대통령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공직선거법 조 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70조 (방송광고)	방송광고 기획비 (방송광고의 기획은 기획사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기획비용을 말함)	○			
	방송광고의 제작비	○			
	방송광고료(최저요금)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영에 소요되는 비용	○			
	방송광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		

● ● ● 방송연설(지방의회의원선거 제외)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7조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방송연설의 기획을 기획사에 의뢰하여 통상거래가격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 기획비용	○			
	방송연설의 제작비	○			
	방송연설 방송료(최저요금)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영에 소요되는 비용	○			
	웅변학원·전문가 등에 지급한 방송연설 원고료	○			
	방송연설을 위하여 전문분장업체에 지불한 분장비	○			
	방송사와 방송연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포함된 후보자 분장 비용	○			
	방송연설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금		○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방송연설 비용 ⇨ 위법비용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방송연설 원고료 ⇨ 위법비용		○		
	방송연설의 시연에 소요된 비용			○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 등에 지불한 비용			○	
	후보자 자신이 직접 한 분장의 재료 구입비, 분장 보조자 사례금, 이발·미용료 등 분장비			○	

●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	선거운동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의 공개장소 연설 · 대담차량 임차비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용 차량의 각종 홍보물 설치 · 철거비	○				
	공개장소 연설 · 대담 차량의 홍보물 설치와 관련한 기획 · 도안료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차량 기사임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용 차량의 고장으로 다른 차량을 임차한 경우 그 홍보물을 교체하기 위해 지불한 1일 동시에 2대를 임차한 경우의 임차비	○			1대분	
	공개장소 연설 · 대담용 연단 제작비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발전기 임차비	○				
	유료주차장을 공개장소 연설 · 대담장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용 차량의 유류비, 유료 통행료, 섬지역에 도선하였을 경우 도선료	○				
	확성장치 · 녹화기 임차비	무선마이크, 앰프,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장치	○			
		멀티큐브, 멀티비전, 점보트론, 액정 빔프로젝션 등 각종 녹화기	○			
		녹화기 운반용 차량	○			
		인공위성을 이용한 녹화기의 영상물 방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위성채널 위성중계 · 영상촬영 차량의 운영비와 인건비, 위성수신 장치 설비비용	○			
	로그송 제작비	로그송 사용에 필요한 저작재산권료, 저작권격권료	○			
로그송 제작업체가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직접 저작재산권료를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		○				
로그송 제작에 소요되는 스튜디오 사용료, 테이프 복사 등 제작비		○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용하는 녹화기용 영상 홍보물의 CF·애니메이션 등 기획·도안료, 제작비	○			
	전문가에게 지급한 공개장소 연설 원고료	○			
	예비용 확장장치를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임차비	○			실제 사용일을 일할계산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설치된 녹화기를 통하여 방영하는 홍보물에 수화통역을 함께 방영하는 경우 수화통역자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수화통역자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수화통역을 한 경우 수화통역자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			
	래핑을 위하여 차량을 개조하게 될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구조물 설치비 포함)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유세로봇, 홍보마네킹 설치비	○			
	연설·대담차량의 LCD 영상상영을 위한 노트북 임차비용	○			
	후보자의 배우자를 연설·대담차량 기사로 고용하고 지급한 기사인부임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녹음기의 배터리 교체비용	○			
	정당·후보자·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으로 사용한 경우		○		통상거래 가격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도색한 경우 그 도색비		○		
	중앙당이 확장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 지원한 경우 그 차량임차료		○		통상거래 가격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통상적인 차량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LED전광판 운용기사 인부임 외에 별도 지급한 기사 인부임 ⇨ 위법비용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임 외에 별도 지급한 기사 식대, 숙박비 ⇨ 위법비용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공개장소 연설 원고료 ⇨ 위법비용		○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을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례금 ⇨ 위법비용 ※ 연설 전문가를 고용하여 연설·대담을 하게 한 경우와 일반인이 후보자 등의 지정을 받아 연설·대담을 한 경우를 포함		○			
	전체 임차료에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전이나 선거일이후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가 포함된 경우			○	선거운동 기간만 일할계산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범퍼, 타이어, 라이닝, 유리, 각종 오일 교환 등 수리·정비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보호용 덮개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임차하여 사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보험료			○		
	확성장치· 녹화기 수리비	무선마이크, 앰프,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장치			○	
		멀티큐브, 멀티비전, 점보트론, 액정 빔프로젝션 등 각종 녹화기			○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능력 향상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 등에 지불한 비용			○		
	연설문 코팅비			○		
	선거운동기간 매일 아침 전문가에게 메이크업을 받은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			○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시 정당한 손해배상에 근거한 차량 수리비			○		
주차위반 과태료, 교통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				정치자금 지출대상 아님		

●●●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제82조의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 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				
	전자우편 디자인 및 편집비용	○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자우편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설치비 및 이용료	○				
	홈서브 장비 임대료 및 와이브로 데이터 사용요금	○				
	후보자의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 전송용 동영상 제작비용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때 소요되는 비용	○				
	전화 설치비	임시전화 설치·기본료	○			
		임시전화기 임차료	○			
	전화 통화료 (선거운동용 전화기는 임시전화 사용을 원칙으로 함)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이하에서 '통화료' 라고 함)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휴대전화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비 포함, 이하에서 같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	○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한 컴퓨터, C/I 전용전화기,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료	○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통화연결음 제작비용	○				
	선거사무소를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여 전화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한 전화의 선거운동기간 중 통화료	○				
선거사무소에 설치한 전화를 통한 애드다이얼 서비스 이용요금(문자외의 음성정보는 제외)	○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후보자 부담, 080 서비스)	○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정 횟수 5회(예비후보자로서 행한 경우는 횟수에 산입하되 보전하지 아니함)이내에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			
		비즈메시징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선거사무소 유선 전화의 서비스 이용요금	○			
		인터넷 및 유·무선 통신 융합 기술을 응용하여 유선(대표) 전화에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비용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			
		문자메시지를 색상문자로 발송하였을 경우 발송비	○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 ⇒ 위법비용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법정횟수 5회(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를 초과하여 전송한 경우 그 초과 전송에 소요된 비용 ⇒ 위법비용		○		
후보자가 부담하는 적법한 통화료외의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				
선거운동용 전화기 구입 비용		○				
휴대전화 임차료		○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제3자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전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화 통화료		○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대량 전자우편발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텔레마케팅 전문강사 초빙 비용			○	
	일반사무용 또는 정당사무용으로만 사용한 전화 통화료			○	
	선거사무관계자가 사용한 무선기 가입비·임차비 사용료			○	
	선거운동용이 아니라 사무용으로 임차한 컴퓨터 임차료			○	

●●● 인터넷 광고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82조의7 (인터넷 광고)	인터넷 광고 기획·도안료	○			
	인터넷 광고용 배너·팝업 등 제작비	○			
	인터넷 광고비	○			
	인터넷 광고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	○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는 사업자 등에게 지불한 광고비 ⇨ 위법비용		○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페이스북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비지불 ⇨ 위법비용		○		

●●● 확장장치와 자동차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첨부·철거비	○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첨부하는 선거벽보 코팅비	○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첨부하는 선거벽보에 별도의 형광설비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		○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급한 임차료 외의 사례금 ⇨ 위법비용		○		
	선거운동관계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보험료 대납비용 ⇨ 위법비용		○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임차비 · 유류비 · 기사 인건비 · 수리비 등 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선거벽보 첨부 · 철거에 따른 차량훼손 수리비			○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도서지역 이동시 도선비			○	

●●● 공개장소 연설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공개장소 연설 · 대담장 연단 주변에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 · 설치비	○			

●●● 행렬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105조 (행렬등의 금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105조 (행렬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행진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전거 임차비용 ⇨ 위법비용		○		

● ● ●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등)	위법한 여론조사비 ⇨ 위법비용		○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지지도 조사 등 여론조사비			○	

● ● ●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112조 (기부행위의정의등) 제2항제2호 사목	선거운동을 위하여 관할 구역을 방문할 때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	○			
	후보자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지출한 식비	○			
	예비후보자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지출한 식비		○		

● ● ● 선거일후 답례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118조 (선거일후 답례 금지)	선거일후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당선사례 또는 낙선사례 가두방송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에 따른 인사서신 발송비용			○	

● ●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실비(숙박비 제외)	○			
	선거사무원을 근무일을 달리하여 교체 선임·신고한 경우 교체 전·후의 각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된 수당·실비	○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근무일이 중복되도록 선거사무원을 교체 선임·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교체가능인원 범위 안에서 교체 전·후의 각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실비는 1일 분을 실제 선거운동에 종사한 시간 등에 따라 나누어 지급)를 지급하되, 보전하는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는 1명분에 한함		○			
	후보자의 가족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하고 지급한 수당·실비		○			
	선거사무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따라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그 식사제공 비용		○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가 식사를 하였을 경우의 식사비(카드결제 등 증빙서류 구비)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의 취사비 (단, 취사비 항목총액이 선거사무 관계자 식대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초과금액은 위법비용으로 미보전)	취사인부임	○			
		취사도구·주방기구 임차비 ⇨ 구입비는 미보전	○			
		주식 및 부식 구입비	○			
		가스 등 연료비	○			
	선거사무장 등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이동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그 일비 지급범위 내에서 지급한 임차료 및 기사인부임		○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의 도선료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식대 외의 활동비·격려금·회식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 ⇨ 위법비용			○			

공직선거법 조	지출항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가족에게 선거사무소에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 그 식사비 (다만,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인 경우에는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됨)		○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별도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지급한 수당·실비		○		
	선거일에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도선료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후보자의 신분으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위법비용		○		
	선거사무관계자외의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활동비·격려금·식대·회식비·교통비·선물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 ⇨ 위법비용		○		
	선거사무소 등에서 서류정리, 비품관리, 회계업무 보조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한 자에게 제공한 활동비·격려금·식대·회식비·교통비·선물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제공에 소요된 비용 ⇨ 위법비용		○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 등 제3자가 정당, 정당 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선거사무관계자·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회식비, 식대 ⇨ 위법비용		○		
	안전관리요원 명목의 인건비는 위법비용이나 경비 업체를 통한 단순 안전관리 의뢰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임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 인부임 ⇨ 위법비용		○		
회계사무보조자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 등 ⇨ 위법비용		○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후보자 숙박비			○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의 숙박비			○	
	우천시에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일회용 비옷 구입비용			○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공직선거법』 제91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를 포함)의 운영비용(임차료 및 기사인부임 등)			○	
	배우자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	
	장애인 후보자가 그의 활동보조인 (활동보조인은 1명만 둘 수 있음)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부담)	

● ● ● 과태료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과태료납부자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를 후보자가 대납한 경우 그 비용 ⇨ 위법비용		○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예 - 선방위 초청대상 대담토론회 개최시 불참한 후보자 등)				정치자금 지출대상 아님

● ● ● 대집행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271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대 집행비용납부자가 부담해야 할 대 집행 비용을 후보자가 대납하는 경우 그 비용 ⇨ 위법비용		○		

● ● ● 그 밖의 사항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할 대상
		보전	미보전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지 못하거나 납품이 지연되어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물품의 구입비용			○	
	선거권자 추천장 인쇄비용			○	
	후보자 본인의 정당활동 사진을 선거기간 중 각 언론기관에 보도용으로 제공한 비용			○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서류에 첨부되는 후보자 사진 작성비용			○	
	선거사무관계자 신분증 발급을 위한 코팅비를 후보자가 부담한 경우 그 비용			○	
	선거비용의 계좌입금·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선거비용 지출을 위한 수표발행 수수료			○	
	정치자금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비용			○	
	당선축하용 꽃다발 구입비			○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			○	
	기자회견 장소 사용료			○	
	선거인명부 사본교부비용과 인쇄비용			○	
	「공직선거법」 제 89조 제항에 따른 선거대책기구에서 상근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함 제작 비용			○	

Ⅵ.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1. 산정 기준

- 전문가격조사기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대상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금액을 통상거래가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함.
- 다만, 물품 등의 구입·제작에 특수재질·특수인쇄·특수조건이 부가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의 산정액 외에 별도의 비용을 인정함.
- 정부의 기준요금이 있는 항목은 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통상거래가격 등으로 함.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명함 등 인쇄물의 경우 선거 종료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업종 30이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격을 통상거래가격으로 함.
- 점자형선거공보 등 점자인쇄비(천공방식)는 인쇄방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사된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그 통상거래가격으로 함.
- 통상거래가격 산정 항목 중 특정 규격이 없는 항목의 통상거래가격은 해당 항목의 바로 위·아래 규격의 산정액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함.
예) 산정 항목 중 규격이 없는 차량용 확장장치 앰프 2KW의 1일 임차가격은 앰프 1KW의 1일 임차가격 151,000원과 앰프 3KW의 1일 임차가격 219,000원 사이의 185,000원을 통상거래가격으로 결정함.
- 통상거래가격 등을 산정함에 있어 1,000원 미만의 단수는 1,000원으로 함. 다만,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기준요금,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단가 산출액, 특수재질 등이 부가되어 별도의 비용을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2.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1. 간판 제작비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재 질	산정액	비 고
외벽게시용	㎡	플렉스	130,000	㎡당 단가, 조명·설치· 철거비 포함
		포맥스	78,000	
		문자 LED 전광판	624,000	㎡당 단가, 설치·철거비 포함

2. 현수막 제작비

(단위 : 원)

구 분	구 격	재 질	산정액	비 고
거리게시용	제작비	㎡	12,000	㎡당 단가, 설치·철거비 포함
	이동게시비	1일, 1인	80,732	정부기준요금
외벽게시용	㎡	천	16,000	㎡당 단가, 설치·철거비 포함

3. 외벽게시용 간판·현수막 설치·철거 장비 임차료

(단위 : 원)

구 분	구 격	산정액	비 고
크레인	1일	411,000	
사다리차	1일	385,000	
로프이용료	1일, 1인	212,000	

4. 후보자 사진

(단위 : 원)

구 분	구 격	산정액	비 고
촬 영 비	104cm×76cm	2,834,000	
	76cm×53cm	477,000	
제 작 비	104cm×76cm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업종 30이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격	
	76cm×53cm		
	104cm×76cm	실소요비용	
	76cm×53cm		

5. 명 함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정액	비 고
제 작 비	9cm×5cm이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업종 30이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격	

6. 선거벽보 ·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정액	비 고	
기 획 · 도 안 료	선거벽보	대통령	76cm×52cm	1,400,000	면 당 단 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53cm×38cm	674,000	
	선거공보	대통령 (전단형, 1매 양면이내)	38cm×27cm	738,000	
			54cm×19cm		
		대통령 (책자형, 16면 이내)	27cm×19cm	520,000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12면 이내)	27cm×19cm	155,000	
		지방의회의원(8면 이내)	27cm×19cm	148,000	
	선거공약서	대통령(32면 이내)	27cm×19cm	258,000	
		시도지사, 교육감(16면 이내)	27cm×19cm	163,000	
		자치구 · 시 · 군의 장 (12면 이내)			
인 쇄 료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업종 30이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격			

*기획·도안료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기획·도안료 총액의 범위내에서 합산하여 보전 가능

7. 어깨띠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재 질	산정액	비 고
제작비	240cm×20cm이내	부직포	7,000	개당 단가

*특수재질· 특수인쇄 등이 입증되는 경우 별도 비용 인정

8. 윗 옷

(단위 : 원)

구 분	산정액	비 고
구입비	30,000 이내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별당 단가)
기호 등 인쇄비	3,000	별당 단가

9. 모 자

(단위 : 원)

구 분	산정액	비 고
썬 캡 형	5,000	개당 단가
일 반 형	6,000	
기호 등 인쇄비	1,000	

10. 신문광고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정액	비 고
기획·도안료	1면, 4단	1,930,000	
	2~4면, 5단	1,533,000	

11. 공개장소 연설 · 대담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정액	비 고
차량 임차료 (1일)	1톤	104,000	기사인부임·유류비 미포함
	1.5톤	150,000	
	2.5톤	192,000	
	5톤	308,000	
	대형버스(45인승)	375,000	
	소형버스(25인승)	239,000	
기사인부임	1인, 1일	111,000	
차량용 확장장치 임차료 (1일)	앰프100w	52,000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인버터 포함
	앰프300w	64,000	
	앰프500w	85,000	
	앰프700w	116,000	
	앰프1KW	151,000	
	앰프3KW	219,000	
	앰프5KW	315,000	
	앰프7KW	451,000	
	앰프9KW	547,000	
차량래핑비	m ²	62,000	
발전기 임차료 (1일)	1KW	53,000	유류비 포함
	3KW	85,000	
	5KW	107,000	
	7KW	143,000	
	9KW	166,000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정액	비 고
인버터 발전기 임차료 (1일)	1KW	23,000	
	3KW	33,000	
	5KW	43,000	
	7KW	54,000	
	9KW	71,000	
차량용LED전광판 임차료 (1일)	3㎡	708,000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용) (3㎡이내)
	5㎡	757,000	대통령,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연락소용) 국회의원, 자치구·시·군장 (후보자용) (5㎡이내)
	7㎡	1,074,000	
	10㎡	1,496,000	대통령(시·도연락소용)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자용) (10㎡이내)
녹화물 제작비	30초품	2,169,000	
	1분품	3,158,000	
	3분품	4,318,000	
	5분품	5,445,000	
	7분품	7,034,000	
	10분품	8,509,000	
로그송저작재산권료	대 통 령	2,000,000	
	국회의원, 자치구·시·군장	500,000	
	시·도지사, 교육감	1,000,000	
	시·도의원	250,000	
	자치구·시·군의원	125,000	

12. 인터넷 광고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정액	비 고
제 작 비	동영상	5초품	1,102,000	기획료 포함
		10초품	1,303,000	
		15초품	1,496,000	
		20초품	1,806,000	
		30초품	1,862,000	
		60초품	3,579,000	
	팝업	1편	333,000	
배너	1편	307,000		

13. 전화홍보시스템

(단위 : 원)

구 분	산정액	비 고
일반전화홍보시스템(1세트)	890,000	노트북 pc, 전화단말기, 솔루션 포함
서버운영시스템(OS)	2,694,000	OS설치PC, 전화단말기 10대

14. 점자형 선거공보 등 제작비(천공방식)[부담비용]

- 1,000매 이하 제작의 경우 : 매당 750원(양면)
※ 점자점역비, 제판료, 지대, 인쇄료, 제본료, 한글인쇄비 등이 포함된 금액임.
- 1,000매 초과 제작의 경우 : 아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단위 : 원)

점자점역비(조판비)(면당)		40,000	
점자제판료(양면 1판)	23,000	판당내쇄력	1,300매
지대(매당)	19		
점자인쇄료		점자제본료 [앞면 한글인쇄비(스티커부착비) 포함]	
기준매수	양면1매당	기준부수	부 당
10,000매 초과	190	10,000부 초과	230
5,000매 초과	200	10,000부 이하	260
1,000매 초과	210	5,000부 이하	290
		1,000부 이하	310
		500부 이하	330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점역·교정사(국가공인민간자격)의 점자해독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VII. Q & A

1.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관계자

Q | 01 선거사무관계자가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식사를 제공받았다면 그 식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지요?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는 1인당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경비는 적법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로서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전청구 시 후보자와 함께 단닌자의 식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위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는 제공받은 끼니만큼의 식비(끼당 6,660원)를 공제하고 실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 | 02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비는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비는 선거비용에 해당하나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식사대용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Q | 03 선거사무소 방문객 제공용 커피 자동판매기 임차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되어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

04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취사인부임 및 부식구입비는 선거비용인가요?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선거사무장 등에게 제공하는 실비(식비)의 범위내에서 취사인부 고용 및 쌀·반찬 등 부식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비(식비)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보전합니다.

※ 취사비총액(취사인부임, 취사도구·주방기구임차비, 주식 및 부식 구입비, 가스 등 연료비)은 선거사무관계자 식대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초과금액은 위법선거운동 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Q

05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시 보전대상인가요?

❖ 회계사무보조자는 선거사무장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수당 또는 실비 기타 이익제공시 위법비용에 해당되어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 선거사무관계자를 회계사무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Q

06 선거사무소에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비한 칸막이 설치비는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2. 시설물·인쇄물 등

Q | 01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외벽게시 현수막, 거리게시 현수막을 교체하여 사용한 경우 그 제작 비용은 모두 보전대상인가요?

❖ 오·훼손 또는 디자인이나 문구 교체등의 사유로 교체 제작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선거비용으로서 보전대상입니다.

Q | 02 선거사무소 내부 게시물은 선거비용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사무소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선거사무소 내부에만 게시하는 각종 홍보물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 | 03 거리게시 현수막의 이동게시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인건비 등의 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이동게시한 경우 현수막 제작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이동 게시에 소요된 비용은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

Q | 04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외벽에 현수막 등의 설치공간이 없어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현수막 등을 게시한 경우 그 구조물 설치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비용이며 보전대상입니다.

Q | 05 예비후보자 시절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제작·설치한 후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에도 계속 사용한 경우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간판 등의 제작비용을 총 게시일수로 나눈 후 선거운동기간중 게시일수를 곱한 금액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일할계산). 다만, 해당 간판 등을 선거운동기간 중에 교체하는 경우에는 새로 교체한 간판·현판·현수막 비용만 보전합니다.

Q | 06 선거일후 현수막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상거래가격으로 산정한 현수막 제작비(P.49참조)에는 기획·도안료 및 설치·철거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만일 당초 설치 계약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현수막의 통상거래가격 범위내에서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

Q | 07 선거운동용 윗옷(기부행위에 이르는 형태는 아님)을 여러 종류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제작 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 「공직선거법」 제68조에 의한 윗옷을 여러 종류 제작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하였다면 모든 종류의 윗옷은 1벌당 3만원 이내에서 각각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
※ 1벌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선거운동으로 전액 보전하지 않습니다.

Q | 08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나요?

-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제작비 중 기획·도안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통상거래가격 범위 내에서 보전하며, 인쇄비는 선거구위원회가 선거종료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업종 30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격 범위 내에서 보전합니다.

Q | 09 오·훼손된 선거벽보의 재첩부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통상적인 인부임은 보전대상인가요?

- ❖ 선거벽보 재첩부 관련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는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

Q | 10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나요?

- ❖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됩니다.
- ❖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에게는 아래 기준에 의해 산출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000매 이하 인쇄의 경우 : 매당 750원(양면)
- 1,000매 초과 인쇄의 경우 : V.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 점자형선거공보 등 제작비 (P.54)참조

Q | 11 점자형 선거공보의 경우 도안·칼라 또는 색지 등으로 인쇄한 경우도 부담해 주는지요?

- ❖ 점자형 선거공보를 도안·칼라 또는 색지 등으로 인쇄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시각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로서 해당 비용은 부담 비용에서 제외합니다.

Q | 12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명함을 만들어 배부하고 후에 후보자 등록후에도 예비후보자때 제작하였던 명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보전은 어떻게 되는지요?

- ❖ 후보자는 총 인쇄 수량,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배부한 수량, 후보자의 신분으로 배부한 수량, 잔여수량을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는 「명함 사용 내역서」와 관련 인쇄비용 증빙서류를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함 사용 내역서

1. 선거명(선거구명) :

2. 소속정당명 :

3. 후보자명 :

4. 명함 인쇄 및 사용 내역

가. 총 제작 수량 :	매
나.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배부한 수량 :	매
다. 선거운동기간중 배부한 수량 :	매
라. 잔여수량 :	매

5. 보전청구액

가. 총 인쇄비용 :	원
나. 매 당 단 가 :	원
다. 청 구 금 액 :	원(매당단가×선거운동기간 중 배부한 수량)

2012년 12월 19일 실시한 선거에 있어 후보자 명함 제작 사용 내역 및 보전청구액을 위와 같이 소명합니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용 내역 보고 및 청구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귀 위원회에 반환하는 등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 명함제작 인쇄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후보자(정당)	(인)
	선거사무장	(인)
	회계책임자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3. 공개장소연설·대담

Q

01 로고송 제작시 저작재산권료 및 저작인격권료도 선거비용 보전대상인가요?

- ❖ 로고송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이며 저작재산권료, 저작인격권료, 제작비로 구성됩니다.
- ❖ 저작재산권료란 원래의 곡을 개사·편곡없이 복제하여 대중에게 사용하고자 할 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전 지불하는 비용으로 (P.53)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 저작인격권료란 원래의 곡을 개사 또는 편곡하고자 할 때 해당 저작권자(작사·작곡가)에게 사전 동의를 얻고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불한 비용을 말합니다.
- ※ 불법사용에 따른 비용은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보전청구 시 저작재산권료 납부영수증과 저작권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 로고송 문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TEL.02-2660-0522~27)
[http:// www.komca.or.kr](http://www.komca.or.kr)

Q

02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의 홍보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기획·도안료는 보전대상인가요?

- ❖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

Q

03 유료주차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보전대상인가요?

- ❖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

Q

04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자동차·확성장치 등을 구입한 경우 보전받을 수 있나요?

- ❖ 선거일후에도 자산가치가 남거나 활용이 가능한 자동차·확성장치 그 밖의 내구재 구입비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

05 선거운동용 자동차(「공직선거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 등 첩부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함)에 선거벽보 첩부·철거에 따른 차량훼손 수리비는 보전대상인가요?

-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되어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

06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유류비는 어떻게 보전하나요?

- ❖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유류비의 실소요 금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 전화이용 선거운동

Q | 01 선거사무소에 임시전화를 설치한 후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유권자와 유선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에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 선거사무소에 임시전화를 설치한 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이는 적법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임시 전화의 설치에 따른 설치비와 선거운동기간중의 기본료 및 통화료(시내·외통화료 불문,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포함)는 모두 선거비용이며, 보전대상입니다.
- ❖ 임시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선거사무소에 기설치된 일반전화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중 전화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선거운동에 사용한 통화료에 관한 입증자료(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청구서, 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 직전 3개월간의 평균통화료 산출자료)와 정확한 청구금액(선거운동기간 중의 통화료 - 직전 3개월간의 통화료를 일할 계산한 후 선거운동기간 일수 만큼을 곱한 금액)을 선거비용보전청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선거사무소에 기설치된 일반전화를 사용할 경우 보전청구할 통화료산출, 증빙서류 구비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화이용 선거운동에는 임시전화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에게 소정의 법정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금품 등을 보상하거나, 자원봉사자에게 그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Q | 02 선거운동기구에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한 경우 그 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나요?

- ❖ 수신받는 전화가 유선전화인지, 휴대전화인지를 불문하고 그 통화료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입니다.
- ❖ 따라서 선거운동기구에 설치한 전화로 선거권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통화료는 선거비용으로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Q | 03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선거권자에게 전화를 걸어(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통화료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이 아니나,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 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를 후보자가 부담하였다면 그 통화료는 보전합니다.

❖ 다만, 후보자가 휴대전화를 임차하여 위 대상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그 휴대전화 통화료 외에 휴대전화 임차료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 | 04 보전되는 휴대전화 통화료에는 문자메시지 전송료도 포함되나요?

❖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료도 휴대전화 통화료에 포함됩니다.

Q | 05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통화연결음 제작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

Q | 06 전화통화료는 모두 보전대상인가요?

❖ 유선전화의 경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된 전화의 통화료(설치료 등 포함)만 선거비용으로서 보전대상입니다.

❖ 휴대전화의 경우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 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만 보전대상입니다.

❖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과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선거사무소에 설치한 전화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애드다이얼 서비스 이용요금은 보전대상입니다.

5. 신문·방송·인터넷 등 이용 선거운동

Q

01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 운동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나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

02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자우편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설치비 및 이용료는 보전대상인가요?

❖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차한 홈페이지의 임대료 및 와이브로의 데이터 사용요금은 보전대상입니다.

Q

03 신문광고 및 인터넷 광고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는 보전대상인가요?

❖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

Q

04 신문광고비용 또는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비용은 모두 보전대상인가요?

❖ 신문광고비용 또는 방송연설비용은 선거기간 중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므로 최저요금 범위 내에서 보전합니다.

Q

05 후보자가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 전송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선거운동하는 경우 그 제작비용은 보전대상 인가요?

❖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

Q

06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 보전대상인가요?

❖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안내서

발행일	2012년 11월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우편번호 427-727)
디자인	사회복지법인 해든디자인플러스 02)868-6854
